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」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안내

1.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근거
 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 5조 및 제 7조
 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70호(2021.6.22.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 - 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사업실 2021-제5호(2021.6.23.) ‘「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」 공고’
3. 위와 관련하여 일부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, 회원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

구분	희귀질환	극희귀질환	기타염색체이상질환
분류 변경	1건 (극희귀→희귀)	10건 (기타염색체이상질환 → 극희귀질환)	-
등록기준 생성	-	10건	-
검사기준·검사항목 변경	1건	2건	-
상병명·상병코드 변경	1건	-	1건

나.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

1) 대상질환

- 중증아토피성피부염(V308/L20.85): 경과규정 삭제

다. 시행일: 2021. 7. 1.

라. 세부내용: ‘붙임’ 참고

※ 변경되는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(국민과함께/뉴스·소식/공고·입찰) 및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공고문 급여사업실 2021-제5호 1부.
 2. 고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부.
 3. 희귀질환&극희귀질환&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1부.

4. 중증난치질환&중증치매 등록기준 1부.
5. 산정특례 희귀질환&중증난치질환 신규대조표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장

주임

김리윤

팀장

김은영

부장

전결

6/23

조순자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1290 (2021.6.23.) 접수 ()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4649 전승 033-749-9616 / jhye12@nhis.or.kr / 공개